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6월 08일

고척제2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아 *민	이 *민 1985-10-02	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33길 (고척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5-30